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AI 사용 지침

2026년 10월 7일

전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의 발전은 교육과 학습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한편, 평가의 공정성과 학문적 정직성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함께 제기한다.

본 지침은 AI의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교과목과 과제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활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학생과 교수자가 미리 공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컴퓨터공학부는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부이다. 학생이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그 자체로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동시에 본 학부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AI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수적인 학습 목표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과제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바가 다를 뿐이다.

이에 본 지침은 학부 전체에 단일한 규칙을 두지 않고, 네 개의 사용 등급을 두어 각 과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따라 담당 교수가 등급을 정하도록 한다.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 및 관련 학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기술 발전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제1장 총칙

1. 목적

본 지침은 교육·학습 과정에서의 AI 활용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평가의 타당성 — 성적이 학생 본인의 역량을 반영하도록 한다.

(2) 정직성 — 본인이 수행한 부분과 도구가 수행한 부분을 구분하여 밝히도록 한다.

2. 적용 범위

(1) 본 지침은 컴퓨터공학부가 개설하는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학업 활동은 해당 교과목의 과제, 프로젝트, 보고서 및 시험(이하 '과제물')이다.

(2) 학위논문, 논문자격시험, 학위논문 심사 등 교과목 이수와 구분되는 학위 과정상의 절차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절차에는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 및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교과목 이수와 관련되지 않는 연구 활동에도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AI 사용 등급

1. 등급 구분

(1) 모든 과제물에는 아래 네 등급 중 하나를 지정한다.

(2) 등급은 학년이나 교과목의 단계가 아니라 그 과제물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따라 정한다. 교과목 전체에 하나의 등급을 일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과제물마다 다른 경우에는 과제물별로 달리 지정한다.

(3) 아래 등급 체계는 기본값에 해당한다. 담당 교수는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등급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고 그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등급	사용 범위	허용 예시
Level 0	사용 금지	없음. AI 사용이 평가 대상 역량 자체를 대체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Level 1	보조적 사용만 허용 + 표기 의무	문법 교정, 번역, 표현 다듬기, 오류 메시지 해석에 대해 사용을 허용한다. 사용 내용을 밝히며, 아이디어 생성, 문제 해결 전략 수립, 코드 작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Level 2	도구로 허용 + 표기 의무	코드 작성, 디버깅, 자료 조사에 대해 사용을 허용한다. 사용 내용을 밝히며, 결과물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학생이 진다.
Level 3	자유 사용 + 표기 의무	활용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AI 활용 자체가 학습 목표인 과제물에 지정한다. 이 등급에서도 어느 부분을 본인이 작성하였고 어느 부분에 AI를 활용하였는지는 밝힌다.

본 지침의 네 등급은 AI Assessment Scale(AIAS)[5][6]의 5단계 구조를 참고하되, 본 학부의 교과목 구성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각 등급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Level 0 — 직접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학습 목표인 경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경험이 학습의 핵심이다. 학생은 스스로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하고, 자료구조를 선택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익히게 된다. 이러한 학습은 완성된 코드를 읽는 것으로 대체되지 아니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번역기가 문장을 대신 만들어 주면 작문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직접 구현해 본 학생이 AI가 작성한 코드를 포함한 타인의 코드를 더 정확히 읽고 수정할 수 있다. Level 0은 AI의 활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 프로그래밍 교과목 외에도 구현의 과정 자체가 평가 대상인 과제물에는 이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교과목의 구현 과제는 직접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학습이 곧 과제의 목적인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해당 교과목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교과목이라도 자료 조사나 보고서 작성과 같이 구현 역량을 평가하지 않는 과제물에는 Level 1 또는 Level 2를 지정할 수 있다.

(2) Level 1 — 언어 표현이 내용의 평가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경우

문법 교정이나 번역은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평가 대상이 아니다. 외국어로 과제물을 작성하는 학생에게 표현의 부담이 내용의 평가를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다만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은 평가 대상이므로 이 등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Level 2 — 도구의 활용이 학습 목표에 포함된 경우

전문 개발 도구를 다루는 능력은 실무 역량의 일부이다. 도구의 활용이 학습 목표에 포함된 과제물이라면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제출한 코드를 학생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설명하지 못하는 코드는 본인의 작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4) Level 3 — AI의 활용 자체가 학습 목표인 경우

AI의 활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학습 목표인 과제물에는 활용 방식의 제약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이 등급에서도 표기 의무는 유지한다. 본인이 수행한 부분과 도구가 수행한 부분을 구분하여 밝히는 것은 활용 범위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2. 코드 작성에 관한 원칙

(1) Level 0 및 Level 1에서는 AI가 코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도구의 종류나 기능의 명칭과 무관하게 적용하며, 통합개발환경(IDE)의 자동완성과 같이 코드 작성을 대행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

(2) Level 2 이상에서는 제출한 코드를 학생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구성원별 준수사항

1. 교수자

(1) 등급의 명시

담당 교수는 강의계획서의 '생성형 AI 도구 활용 방침' 항목과 각 과제물의 안내에 사용 등급을 명시한다. [1] 등급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사후에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학기 중 변경은 사전에 공지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코드 작성에 관한 안내

Level 0 또는 Level 1을 지정한 과제물에 관하여 담당 교수는 AI가 코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한다. 도구별 설정 방법에 관하여는 문의하는 학생에게 안내한다.

(3) 평가 방식의 자율성

평가 방식은 담당 교수가 교과목의 학습 목표에 따라 설계한다. 본 지침은 직접 구현이 학습 목표인 과제물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학생

(1) 수업 정책의 확인과 준수

학생은 강의계획서 및 과제물 안내에 명시된 사용 등급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AI의 활용이 허용되는 등급(Level 1 이상)에서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활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2) 표기와 평가의 관계

허용된 범위에서 AI를 활용하고 이를 표기한 경우, 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한다.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가 위반에 해당한다. 성실한 표기는 학습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본다.

(3) 결과물에 대한 책임

학생은 허용된 범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출한 결과물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교과목의 성적은 그 교과목에서의 학습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위반 시 불이익의 인식

학생은 지정된 등급을 위반한 활용이 확인된 경우 학습 윤리 위반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3. 학부

(1) 학부는 매 학기 시작 시 학생에게 본 지침을 안내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학부는 최소 1년마다 본 지침을 재검토한다.

(3) 학사위원회는 교수 간 등급 적용이 지나치게 엇갈리지 아니하도록 사례를 공유한다.

(4) 학부는 유료 AI 도구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제4장 학습 확인 및 이의 제기

1. 구술 확인

(1) 적용 범위

구술 확인은 Level 2 이상의 과제물에 적용한다. 확인의 대상은 AI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제출물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Level 0에서의 사용이나 Level 1에서 허용 범위를 초과한 사용은 등급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4장 2와 학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절차

가. 담당 교수는 제출물에 대한 구술 설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나. 질문은 제출물 자체에 한정한다.

다. 학생이 설명한 경우 그것으로 종료한다.

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3) 운영

사전에 목적을 알리고 진행한다. 무작위 표본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2. 이의 제기

아래는 표준 절차이며, 각 교과목은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1) 담당 교수가 1차로 판단하고, 학생은 학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른다.

가. 담당 교수가 의심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한다.

나.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 학사위원회가 최종 판단한다.

(3)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한 간접증거가 축적된 경우 학사위원회는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위 (2)의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한다.

(4)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며, 첫 사례를 곧바로 징계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시행

2026학년도 2학기는 안내 및 시범 적용 기간으로 하고,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정식 시행한다.

부록 A. 활용 사실의 표기 방법

Level 1 이상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제출물의 말미에 다음을 적는다.

(1) 사용한 도구 (2) 사용한 부분 (3) 결과의 검증 방법

표기의 누락은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아니라 절차 위반으로 다룬다. 다만 반복되거나 은폐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학사 규정에 따른다.

부록 B. 참고문헌

[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 전문 · 제정 안내

[2] Carnegie Mellon University, Eberly Center. Examples of possible academic integrity policies that address student use of generative AI tools. cmu.edu

[3] Vanderbilt University. Academic Integrity and Generative AI. vanderbilt.edu

[4] Russell Group. Principles on the use of generative AI tools in education. 2023. russellgroup.ac.uk

[5] Perkins et al. The AI Assessment Scale (AIAS): A Framework for Ethical Integration of Generative AI in Educational Assessment. 2023. arXiv:2312.07086

[6] Perkins et al. The AI Assessment Scale Revisited: A Framework for Educational Assessment. 2024. arXiv:2412.09029

[7] Columbia University, Office of the Provost. Generative AI Policy. provost.columbia.edu

[8] Stanford University. Academic Integrity Working Group addresses generative AI and exam policies. Stanford Report, 2025-10. news.stanford.edu